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문화공보관 김 진 호
 전화: 75-7834

제 845 호
 1981. 7. 3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521 호:	서울특별시종합구관장용자금지급조례	3
제 1622 호:	서울교육원설치조례증개정조례	4
◎ 규	칙	
제 1915 호:	서울특별시종합구관장용자금지급조례시행규칙	5
제 238 호 (시교위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정원여관규칙증개정규칙	10
고	시	
제 241 호: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변경시행허가	13
제 242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4
제 243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5
제 24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6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4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및지적승인	16
제 246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따른도로변경고시	17
제 248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변경허가	18
제 24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8

◎ 공 고

제 178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	19
제 33 호 (용산구공고) :	공인개각공고	19
제 24 호 (시교위공고) :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공고	19

◎ 예 규

제 411 호 :	서울특별시채리지관리및처분규정중개정규정	20
-----------	----------------------------	----

◎ 출 석 통 지

◎ 사 명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구관장 융자금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1년 7월 3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21 호

서울특별시종합구관장융자금지급조례

서울특별시 종합구관장 융자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세
민 집단 거주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을 위하여 설치한 종합구관장의 운
영비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구관장"이라 함은 시장이
영세민에게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유통시설을 말한다.
2. "운영수탁자"라 함은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일체
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

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 3 조 (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서울
특별시 종합구관장의 운영수탁자로
운영비용자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4 조 (융자전차) 융자금은 종합구
관장 운영수탁자의 사업계획서들
첨부한 융자신청서에 의거 융자한다.

제 5 조 (이자율) 융자금의 이자율은
부이자로 할 수 있다.

제 6 조 (융자한도) 융자금의 지급한
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 7 조 (융자금상환) 융자금의 지급
을 받은 운영수탁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종합구관장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지할때
2. 운영수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종
합구관장사업을 계속할수 없을때
3. 운영이 정상화되어 연간 수익
이 상당액 발생하여 융자의 원
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때
4. 운영수탁자의 경영능력 부실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

제 8 조 (융자제한) ① 제 3 조의 규정
에 의하여 운영자금을 융자받고자
할때에는 융자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은 융자신청 목적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운영수탁자는 종합구관장의 운영·시설, 융자동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감독) 종합구관장 운영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유념하고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종합구관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합리적인 운영으로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운영수탁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변경, 증·개축등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종합구관장의 운영실적은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금설치) 영세민의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융자금을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11 조 (시행규칙) 이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22 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1년 7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갑(인)

서울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위치) 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 27호에 무교아의수련장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대성의집 : 경기도가평군의서면대성리 548 번지
2. 천마의집 : 경기도남양주군미금면호평리산 번지 1호
3. 대천의집 : 충남보령군대천읍신후리 1454 번지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정원)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하부조직) 교육원에 서무과

교무과 및 지도과를 두의 서무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과장은, 지도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종합구관장 용자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박 영 수

1981년 7월 3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915 호

서울특별시 종합구관장 용자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안)

서울특별시 종합구관장 용자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합구관장 용자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종합구관장 운영자금 용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자신청) 종합구관장 운영자금 용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용자신청서 (별지 제 1 호서식) 2부
- 2. 사업계획서 (별지 제 2 호서식) 2부

제 3 조 (감독) 조례 제 11 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구관장 위탁운영 관계서류의 제시등 검사를 할 수 있다.

제 4 조 (운영지시) 시장은 구관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관장 운영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 5 조 (보수명령) 시장은 구관장시설을 손상제한과에 대하여 권상 회부 등 보수를 명하거나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 6 조 (보고) 구관장 운영수탁자는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 3 호서식)를 매익월 10일까지, 결산서는 더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이 끝난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업계획서 제출) 구관장 운영수탁자는 매년 1월 10일까지 구관장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호서식)

종합구관장 운영자금용자신청서

1. 신청인

주소:

업종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 신청내역

용도	총소요액	자기자금	용자신청액	비고
운영자금				
합계				

서울특별시 종합구관장 용자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 2 조에 의거 용자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⑩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제 2 호 서식>		
<u>종합구판장사업계획서</u>		
1. 시장개요		
가. 구판장명 :	나. 대표자 :	
다. 소재지 :	라. 개설일자 :	
라. 규모	(1) 대지면적 평	
	(2) 건물규모 평	
	(3) 건물구조 (자재별)	
바. 기업형태 및 종업원수	(1) 기업형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단법인) 기타)	
	(2) 상시 종업원수 명	
사. 소유관계	(1) 주주수 인	(2) 3대주주지분 %
아. 부대시설 내역		
자. 구판장 수탁자의 재무구조	(1) 자본금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자산 :	
	(3) 부채 :	
	(4) 매출액(년) :	

2. 년도별 운영계획

가. 사업 내용

(1) 사업목적 및 효과

(2) 세부추진계획

(3) 융자금용도 (구체적으로 기입)

* 여백이 없을 경우 별지를 사용할것.

< 제 3 호 서식 >

(월) 구 판 장 운 영 실 저 보 고

수 신 : 서울특별시

발신 :

참 조 : 상정과장

구판장별	취 급 종 목		매입금액	판매금액	이용자수	비 고
	종 류	품 목				
계						

<p>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1. 7. 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이 창 갑 ㉞</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규칙 제 238 호</p> <p>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p> <p><별 표></p>	<p>관한 규칙중 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81. 7. 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p>
------------------------------------------------------------------------------------------------------------------------------------------------------------------------------------------------------------------------------------------------------------------------------------------------------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표			
1. 지방공무원 정원 총괄표			
총 계	3,685	지방건축기사	3
별정직제	5	지방행정주사	364
비상계획관 (5급상당)	1	지방사서	33
비서관 (5급상당)	1	지방건축기사	16
비서 (6급상당)	1	지방전기기사	3
속기사 (6급상당)	2	지방기계기사	3
3급내지9급계	1,243	지방토목기사	1
지방부이사관	1	지방간호기사	3
지방의무부기감	1	지방약무기사	1
지방서기관	5	지방보건기사	8
지방의무기정	5	지방행정주사보	277
지방행정사무관	68	지방사서보	34
지방사서관	12	지방건축기사보	9
지방보건기사	2	지방기계기사보	2
지방전기기사	1	지방전기기사보	5
지방토목기사	1	지방토목기사보	3
		지방보건기사보	16

지방간호기사보	8	지방기계기사	1
지방행정서기	222	지방보건기사	1
지방사서서기	58	지방행정주사보	23
지방건축기원	11	지방사서보	1
지방토목기원	2	지방건축기사보	3
지방전기기원	1	지방전기기사보	2
지방기계기원	1	지방기계기사보	1
지방보건기원	4	지방토목기사보	3
지방간호기원	1	지방보건기사보	1
지방행정서기보	20	지방행정서기	23
지방사서서기보	35	지방토목기원	2
지방전기기원보	3	지방건축기원	5
기능직	7	지방전기기원	1
교용원	2,420	지방보건기원	1
2.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3
총 계	251	교용원	99
별정직제	5	3. 교육연구원 지방공무원 정원표	
비상제피관(5급상당)	1	총 계	23
비서관()	1	5급내지9급 계	7
비서(6급상당)	1	지방행정사무관	1
속기사()	2	지방행정주사	2
5급내지9급 계	144	지방행정주사보	1
지방행정사무관	23	지방사서보	1
지방보건기과	1	지방행정서기	2
지방전기과	1	교용원	11
지방건축과	2	기능직	5
지방토목과	1	4. 서울교육원 지방공무원 정원표	
지방행정주사	41	총 계	29
지방토목기사	1	5급내지9급 계	9
지방건축기사	5	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전기기사	1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2	고 용 원	231
지방간호기사보	1	7. 중학교 지방공무원 정원표	
지방행정서기	3	총 계	609
고 용 원	20	6급내지 9급 계	208
5. 정독도서관 지방공무원 정원표		지방행정주사	95
총 계	108	지방행정주사보	78
5급내지 9급 계	39	지방행정서기	30
지방부이사관	1	지방행정서기보	5
지방행정사무관	1	고 용 원	301
지방사서관	2	8. 교육구청 지방공무원 정원표	
지방행정주사	2	총 계	275
지방사서	10	5급내지 9급 계	207
지방행정주사보	2	지방행정사무관	6
지방사서보	10	지방건축기사	1
지방전기기사보	~	지방행정주사	61
지방기계기사보	1	지방건축기사	51
지방행정서기	1	지방전기기사	1
지방사서서기	9	지방기계기사	1
고 용 원	69	지방행정주사보	49
6. 고등학교 지방공무원 정원표		지방건축기사보	6
총 계	326	지방보전기사보	6
5급내지 9급 계	89	지방행정서기	45
지방행정사무관	26	지방건축기원	6
지방행정주사	26	지방기계기원	1
지방행정주사보	14	지방행정서기보	10
지방보전기사보	1	지방전기기원보	3
지방전기기사보	3	고 용 원	68
지방행정서기	17	9. 국민학교 지방공무원 정원표	
지방행정서기보	1	총 계	1,702
지방보전기원	1	6급내지 9급 계	311
기능직	6	지방행정주사	125

지방행정주사보	97	지 방 사 서	3
지방행정서기	89	지방행정주사보	1
고 용 원	1,391	지 방 사 서 보	3
10. 학생체육관 지방공무원 정원표		지방행정서기	2
총 계	35	지방사서서기	9
5급내지9급 계	5	지방사서서기보	6
지방행정사무관	1	고 용 원	40
지방행정주사	2	기 능 직	1
지방행정주사보	1		
지방행정서기	1		
고 용 원	30		
11. 마포도서관 지방공무원 정원표			
총 계	34		
5급내지9급 계	20		
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1		
지 방 사 서	2		
지방행정주사보	1		
지 방 사 서 보	1		
지방행정서기	1		
지방사서서기	8		
지방사서서기보	5		
고 용 원	13		
기 능 직	1		
용산도서관 지방공무원 정원표			
12. 총 계	70		
4급내지9급 계	29		
지 방 사 기 관	1		
지방행정사무관	1		
지 방 사 서 관	2		
지방행정주사	1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41호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
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35호(81.2.16)로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 시행허가원 강서구 화곡동 323-9의 14필지 건축면적 및 면적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의 건설부고시 제 465호(79.12.10)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7.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강서구 화곡동 323-9의 14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명칭 : 강서중앙시장
- 3. 면적 및 규모
가. 당초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3,296 ㎡
○ 건축면적 : 1,464 ㎡
○ 연면적 : 4,070 ㎡
나. 변경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3,296 ㎡ (변동없음)
○ 건축면적 : 1,600.02 ㎡
○ 연면적 : 4,405.02 ㎡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주소 : 강서구 화곡동 323-9
성명 : 광덕개발(주) 대표 김현규
- 5. 사업시행기간 : 1981.4.3 ~ 1982.4.2
- 6.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회적, 소유권 권리명세 (별첨)
- 7.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 8.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42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96 호 (74.12.23) 로 동고시 제 556 호 (78.10.25)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 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7.2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농동 861-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 국민대 학교)

명칭 : 국민대학교 교사중축

다. 사업시행규모

- (1) 시행면적 : 102,423 평방미터
- (2) 건축계획

건축면적 : 2,294.92 평방미터

연면적 : 6,375.07 평방미터

층 수 : 지하 1 층, 지상 2 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타겔조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농동 861-1

성명 :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서 성 태

가.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5 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1982.12.30
 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
 면생략)
 다. 사용할토지 : 서울특별시서문북구정릉
 동 861-1 (지목 : 학교용지)
 아.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국민학원
 (수용할 토지없음)

㉔ 서울특별시고시제 243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 서울특별시고시제 354 호 (76.12.
 30) 및 동고시제 225 호 (78.5.17)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
 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
 획법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 1 과와 종로구청 도시
 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7.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종로구홍지
 동 7-1 외 12 필지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
 상명여자사범대학)
 명칭 : 상명여자사범대학시설확충
 다. 사업시행규모
 (1) 시행면적 : 60,485.2 평방미터
 (18,296.8 평)
 (2) 전속계획
 전속면적 : 3,404.33 평방미터 (2 동 :
 1,029.82 평)
 연 면 적 : 8,117 평방미터
 (2,455.4 평)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동별층수 및 면적
 제 1 교사동 : 지하 2 층, 지상 2 층, 옥탑
 건 2,394 평방미터,
 연 5,701.5 평방미터
 제 2 교사동 : 지하 1 층, 지상 2 층
 건 1,010.33 평방미터
 연 2,415.5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홍지동 7 - 1

학교법인상명학원이사장 배상명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5 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1984.2.28

바. 위치도및계획평면도 : 별첨(도면생략)

사. 사용할 도시 : 생략

아.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상명학원
 (수용할 토지없음)

◎ 서울특별시고시제 24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제 135 호 (76.6.21)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 과와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7.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산 4-61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 경희대학교)

명칭 : 호텔경영전문대학신축

다. 사업시행면적 : 4,465.53 평방미터 (1,353.19 평)

라. 건축계획

건축면적 : 462.84 평방미터

(140.01 평)

연면적 : 1,288.88 평방미터 (389.89 평)

구조 : 지하 1 층, 지상 2 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마.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번지

학교법인교황재단이사장 조영식

바.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5 일 이내

(2) 준공년월일 : 1982.2.28

사.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아. 사용할토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산 4-61 (지목 : 위)

25,474 평방미터 중 4,465.59 평방미터

자.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교황재단 (수용할 토지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제 24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및 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결정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1981.7.2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서울특별시장

o 도로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3	26	25m - 40m	8,350m	한강로 3가	행당동광장	550미터 구간격자
변경	"	"	"	"	7,800m	"	"	
신설	중로	3		12m	550m	옥수동 367	옥수동 449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4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도로변경고시

1.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5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계동 106-1 의 16 필지 상에 민영주택 (단독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도시계획 시설 (도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일부 위치 변경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7.3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8	102	중계 94-1	중계 105-8	일부위치
변경	"	"	"	"	"	"	변 경

◎ 서울특별시고시제 248호

도시계획사업 (여객, 자동차정류장)
사업시행 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650호 (78.12.15)로 사업시행 허가된 도시계획사업 (여객 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호 (79.12.10)의 권한 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을 변경허가 (기간연장) 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7.3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독산동 668-35
나. 명 칭 : 도시계획사업 (여객, 자동차정류장) 부지조성공사

다. 면 적 : 8,311㎡ (2,514평)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시도봉구월계동 468-5호
상신교통(주) 대표이사 한귀한
마. 사업기간

당초 : 78.12.15 ~ 81.6.30
변경 : 78.12.15 ~ 81.12.31

◎ 서울특별시고시제 249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88호 (81.3.27)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을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호 (79.12.10)의 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7.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로	3		6 m		34 m		구로동 494		구로동 494-20		

공 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178호

환지계획일부변경 인가 및 환지 예정지 변경 지정공고

1. 영등포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153호(81.6.2)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환지에정지를 일부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 환제도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7. 3.

서울특별시 장

- 환지에정지 변경 내역 -

- 가. 사업명 : 영등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변경위치 : 강남구 삼성동 167-20호와 10필지
- 다. 변경면적 : 3,370.6평

용산구 공고 제33호

공인 개작 공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6조 규

정에 의거 동장 직인 및 개인을 개작. 사용함에 따라 관인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1. 6. 30.

용 산 구 청 장

1. 개작등명 : 이태원1동
2. 사용일시 : 1981. 7. 15.
3. 공인의 인명 : 다음

인 영



공인명

이태원제1동장직인및개인

서울교위공고제 24호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지급 공고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 지급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
공립 초, 중등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 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 자.
가. 연령

- 1) 60세 이상
- 2) 신체 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자는 55세 이상

나. 경력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 교육행정경력 등산)

- 1) 30년이상
-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20년이상
 - 가) 재직중 훈장을 받은자
 - 나) 재직중 각급기관장의 표창을 받은자
 - 다) 재직중 시, 도 단위의 공인된 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자.

2. 수당지급일 : 1981년 8월 31일

3. 신청기간 : 1981.7.10-7.13

4. 신청절차

소정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등을 구비하여 신청인의 소속기관 및 감독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5. 지급액

기준 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에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

6. 지급절차

가. 대상자 결정 불지
지급대상자의 근무학교가 소재 하는 교육구청장 또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불지한다.

나. 수당지급장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7. 기타사항

기타 상성한 사항은 각교육구청 또는 당교육위원회에 문의할것.

1981. 6. 3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 육 감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 411호

서울특별시 채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채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중 "별첨제16호 서식" 동조동항 제3호중 "별지제37호서식" 동조동항 제4호중 "별지 제38호서식"과

제15조 제1항중 "별지제23호서식" 을 각각 별지화 같이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으로 매각토지의 지적종간이 있을 때의 증감평가에 대한 정산은 환지처분시 공인평가 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단가에 의한다.

② 증명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③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중 환지처분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평가토지의 정산은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81.7.1. 이후 매각하는것 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이전에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출 석 통 지

인위 292.1-28

81. 7. 3.

1. 인적사항

가. 성명 : 정 규 선

소속 : 공무원교육원

직명 : 행정주사보

본직 : 총 북보 은근보 은면교사리 407-1

주소 : 서울중구신 당동 372-6

나. 성명 : 오 병 욱

소속 : 중구청

직명 : 지방행정사무관 (전 위생과장)

본직 : 서울성 북구성 북동 46-25

주소 : 서울성 동구 자양동 339-41

2. 출석이유 : 피 징계자로 답변

3. 출석요구일시 : 81. 7. 15. 14:00

4. 출석요구장소 : 서울특별시청 인사과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령 제 10 조 제 6 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4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출석 통지합니다.

1981. 7. 3.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위 원 장

정 규 선
오 병 욱
귀 하

사 령

○ 1981. 6. 26. 별 243 호

공무원교육원 이종상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이종원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대통령령

○ 1981. 7. 1. 별 247 호

도로관리과 양대웅
지방행정사무관

업무과 업무계장에 보함

은평구사무2과 하진철
지방행정사무관

도로관리과 도로기초계장에 보함

중앙선관위 윤수현
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제 임함
은평구 근무를 명함

공원 녹지국 김홍갑
지방행정사무관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 1981. 7. 2. 별 248 호

중구시민국장 이순열
지방자치관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
함. (81.7.2. 부마 40.1. 자제 내무국
대거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 1981. 7. 4.

용산구민방위국장 김태수
서기관

중구시민국장에 임함

중구민방위국장 하영기
서기관

영등포구시민국장에 임함

제 845 호

사

보 1981.7.3 23-23

<p>도도민익회도도행정계장 김 경 호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중구민방위국장직대에 임함</p>	<p>예산1담당관예산총괄계장 김 우 석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용산구민방위국장직대에 임함</p>
<p>서울특별시</p>	